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6.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 및 8. 3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개발부담금제의 부활,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허가목적외 이용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토지관련 업무신설 및 부서간 업무조정 등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부동산 거래시스템 관리업무 추가
○ 부서간 업무조정
· 사회단체보조지원업무(새마을과)→사회단체보조지원업무(기획감사실)

3. 일부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5.참고사항

○ 기구정원조정 계획
○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06. 4. 18~2006. 5. 8(20일간)
• 예고방법 : 성주군공보, 성주군홈페이지, 군·읍면게시판 등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제6목 내지 제23목을 제7목 내지 제24목으로 하고 제6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회단체보조지원업무(총괄)

동조동항제3호중 제31목을 삭제한다.

동조동항제5호중 제21목 내지 제44목을 각각 제22목 내지 제45목으로 하고, 동호에 제21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부동산 거래시스템 관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성주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기획예산업무담당주사"를 "기획담당"으로 한다.

② 성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군정개발담당"을 "기획담당"으로 한다.

③ 성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기획예산업무담당주사"를 "예산담당"으로 한다.

④ 성주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법무통계업무담당주사"를 "감사담당"으로 한다.

⑤ 성주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중 "제13조 및 제22조"를 "제11조 및 제27조"로하고
제7조제1항중 "문화체육담당주사"를 "체육청소년담당"으로 한다.

⑥ 성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사회보장담당"을 "복지기획담당"으로 한다.

⑦ 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중 "사회보장담당"을 "복지기획담당"으로 한다.

⑧ 성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보장업무담당"을 "복지기획담당"으로 한다.

⑨ 성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재난방재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동조제5항중 "건설과 재난방재담당"을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⑩ 성주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재난방재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⑪ 성주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중 "자치발전과장"을 "자치혁신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자치발전과장"을 "자치혁신과장"으로 한다.

⑫ 성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방문보건업무담당주사"를 "건강증진담당"으로 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1. 기획감사실 1)~5) (생 략) 〈신설〉 6)~23) (생 략)	1. 기획감사실 1)~5) (현행과 같음) 6) 사회단체보조지원업무(총괄) 7)~24)(종전6~23목과 같음)	○ 부서간 업무 조정
3. 새마을과 1)~30) (생 략) 31)사회단체보조지원업무(총괄)	3. 새마을과 1)~30) (현행과 같음) 〈삭제〉	○ 관련업무 기획감사실에 조정
5. 종합민원처리과 1)~20) (생 략) 〈신설〉 21)~44) 생략	5. 종합민원처리과 1)~20) (현행과 같음) 21) 부동산거래 시스템 관리 22)~45)(종전21~44목과 같음)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성주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기획예산업무 담당주사"를 "기획담당"으로 한다. ② 성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군정개발담당"을 "기획담당"으로 한다.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 등 신규업무 신설에 따른 시스템화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③ 성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기획예산업무담당주사"를 "예산담당"으로 한다. ④ 성주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법무통계업무담당주사"를 "감사담당"으로 한다. ⑤ 성주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중 "제13조 및 제22조"를 "제11조 및 제27조"로하고 제7조제1항중 "문화체육담당주사"를 "체육청소년담당"으로 한다. ⑥ 성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사회보장담당"을 "복지기획담당"으로 한다. ⑦ 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중 "사회보장담당"을 "복지기획담당"으로 한다. ⑧ 성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보장업무담당"을 "복지기획담당"으로 한다. 제3조제4항중 "방문보건업무담당주사"를 "건강증진담당"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⑨ 성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 중 "재난방재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동조제5항중 "건설과 재난방재담당"을"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⑩ 성주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재난방재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⑪ 성주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중 "자치발전과장"을 "자치혁신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자치발전과장"을 "자치혁신과장"으로 한다. ⑫ 성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방문보건업무담당주사"를 "건강증진담당"으로 한다.	